

2020년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 일부개정 달라지는 사항

□ 개정 사유

- 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한 산림교육시설 운영을 용자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생태적 감수성 증진 및 정서함양에 기여

□ 주요 변경사항

○ 사립휴양시설조성

- (추가) 산림교육전문가양성기관, 사립 유아숲체험원, 사립 산림교육센터 등의 운영비 지원
 - 대출시기 : 자부담 집행 후 잔액 사전용자 가능
 - 운영자금 : 시설 유지·관리비, 직원 인건비, 임차료 등 시설 운영 소요액

□ 세부 변경사항

사업명	현행	변경	변경사유
제2편 세부사업별 집행지침			
제3장. 사립휴양시설조성			
I. 사업개요			
사업목적	산림휴양·문화증진을 위하여 사립 수목원·자연휴양림·수목장림 등을 조성·제공함으로써 국민 보건휴양과 정서 함양에 기여	산림휴양·문화증진을 위하여 사립 수목원·자연휴양림·수목장림 등을 조성·제공함으로써 국민 보건휴양과 정서 함양에 기여 <u>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한 산림교육시설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생태적 감수성 증진 및 정서함양에 기여</u>	산림교육법에 따라 산림교육기관·단체로 등록·지정된 자에게 용자 지원함으로써 산림교육(다양한 산림의 기능 체험·탐방·학습 등을 활성화하고 유아·청소년·일반국민 등 산림교육 대상자의 정서함양 증진에 기여
사업 주요내용	사립수목원·민간정원, 자연휴양림·숲속야영장, 수목장림·치유의 숲 조성·보완·운영을 위한 사업비 용자 지원	사립수목원·민간정원, 자연휴양림·숲속야영장, 수목장림·치유의 숲 조성·보완·운영을 위한 사업비 및 <u>산림교육전문가양성기관, 사립 유아숲체험원, 사립 산림교육센터 등 운영비 용자 지원</u>	(상동)
국고보조근거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자금지원)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재정지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자금지원)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재정지원) <u>「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지원)</u>	용자지원 근거법령 추가

사업명	현행	변경	변경사유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1.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물유전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증식하여 이를 자원화·이용을 촉진하고 국민교육·체험 및 정서·휴양 문화증진을 위하여 수목원·정원의 조성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용자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물유전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증식하여 이를 자원화·이용을 촉진하고 국민교육·체험 및 정서·휴양 문화증진을 위하여 수목원·정원의 조성사업, <u>산림교육시설·기관 운영</u> 등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용자 지원 	산림교육법에 따라 산림교육기관·단체로 등록·지정된 자에게 용자 지원함으로써 산림교육(다양한 산림의 기능 체험·탐방·학습 등)을 활성화하고 유아·청소년·일반국민 등 산림교육 대상자의 정서함양 증진에 기여
2. 사업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완·확충·운영) 사립휴양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완·확충) 사립휴양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 (운영) 사립휴양시설, <u>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사립 유아숲체험원, 사립 산림교육센터</u> 등을 운영하고 있는 자 	사업대상자 명시
3. 지원자격 및 요건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참고16] 유아숲체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사립 유아숲체험원을 등록한 자 [참고16] 산림교육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사립 산림교육센터로 지정 받은 자 [참고16] 	지원자격 및 요건의 세부근거 마련
4. 지원대상 및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립휴양시설 조성 또는 시설 보완, 설치에 필요한 자금 * 대출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목원·민간정원 : 자부담 집행 후 잔액 사전용자 가능 - 자연휴양림·숲속야영장 : 사후용자(자부담 우선집행 및 사업추진실적에 따라 대출) - 수목장림·치유의 숲 : 자부담 집행 후 잔액 사전용자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립휴양시설 조성·보완·설치 및 <u>산림교육시설 운영</u>에 필요한 자금 * 대출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부담 집행 후 잔액 사전용자 가능 : 수목원, 민간정원, 수목장림, 치유의 숲, <u>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사립 유아숲체험원, 사립 산림교육센터</u> 등 - 사후용자(자부담 우선집행 및 사업추진실적에 따라 대출) : 자연휴양림, 숲속야영장 등 	대출시기 근거 마련
5. 사용용도 및 범위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사립 유아숲체험원, 사립 산림교육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 * 운영자금 : 시설 유지·관리비, 직원 인건비, 임차료 등 시설 운영 소요액 	해당사업의 운영방식을 고려하여 신청가능한 운영자금 성격 마련
Ⅲ. 사업추진체계			
2. 사업자 선정 및 대출 실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계획 심사 :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자 중 산림조합장이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확인 후 지원여부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계획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립휴양시설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자 중 산림조합장이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확인 후 지원여부 결정 - <u>산림교육시설 등록·지정을 받은 자 중 산림조합장이 사업계획 또는 운영의 타당성을 검토·확인 후 지원여부 결정</u> 	산림교육시설의 사업자 선정 절차 마련
제4편 참고자료			
	(추가)	[참고16] 참고	용자지원 가능한 산림교육시설의 지정·운영 현황 제시